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요양급여 청구 공무원 자살예방을 위한 긴급조치〉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996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 승 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양부남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6. 5. 18.
3. 회부연월일 : 2026. 5.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무 수행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한 번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고 피해가 매우 큰 만큼, 사후 보상보다 사전 예방과 조기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함.

현행 제도상 ‘요양급여’는 치료비·약제비·입원비 등 공무상 재해에 대한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임. 그런데 공무상 요양 승인 여부는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요양급여가 불승인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요양급여 청구 및 조사 과정에서 대상자의 정신적 위험 상태나 자살 위험성이 사전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요양이 최종적으로 불승인되더라도 필요한 보호조치와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는 이러한 고위험군에 대한 별도의 보호 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요양급여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살 등 위험성이 확인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필요한 보호조치를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가 심의 과정에서 대상자를 고위험군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에 관련 의견을 전달하고, 인사혁신처는 이를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상담·치료 연계 등 필요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7 신설).

II. 검토의견

개정안은 요양급여를 청구한 공무원이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자살예방을 위한 긴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417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 <u><신설></u>	법률 제21417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 <u>제46조의7(자살예방을 위한 긴급조치)</u>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기관장은 제8조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를 청구한 공무원이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하 “고위험군”이라 한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연계 2.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등의 지원 3. 그 밖에 자살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심의회는 제6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에 관한 심의 중 심의 대상 공무원이 고위험군이라고 판단할 만한 상당

	<u>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u> <u>③ 심의회가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제1항에 따른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위험군에 대한 긴급조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u> <u>⑤ 자살예방을 위한 긴급조치에 필요한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국민의 생명 보호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자살 예방에 관한 국가의 책무 및 정책 추진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¹⁾ 자살위험자의 발견·조치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14조에서 규율하고 있음.²⁾

1) 총칙(제1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2장), 자살예방대책 등(제3장),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제4장), 보칙(제5장), 벌칙(제6장)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인하여 자살 위험에 노출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의료적 조치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재해보상 및 재해예방 제도는 마련하고 있으나 자살 예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데,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화재·구조·구급 활동 과정에서 재난 현장, 사망사고, 중증 외상 등 각종 외상 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직무 특성으로 인해 정신건강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을, 시·도에 시·도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³⁾

최근 공무 수행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자살은 개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조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상의 사후적인 보상이나 지원 이외에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예방적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치료를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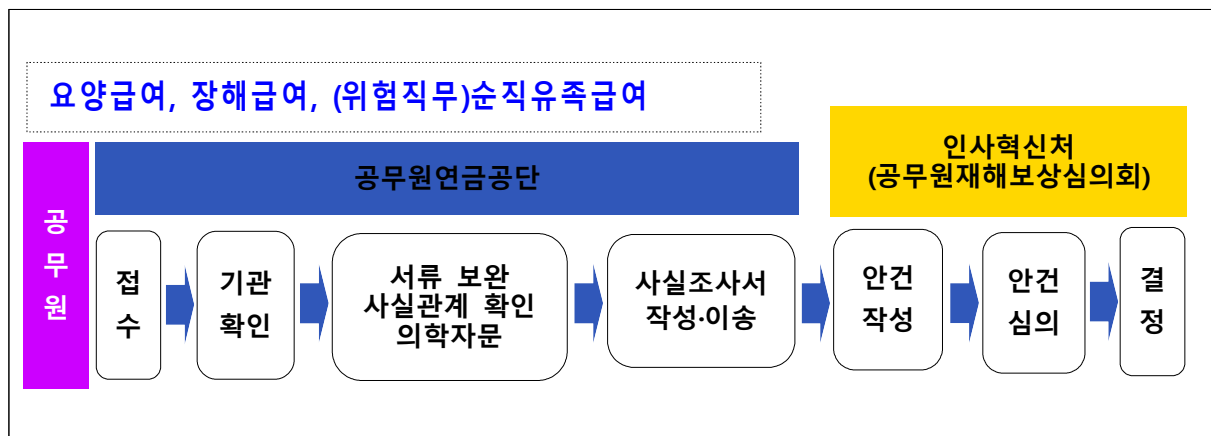
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의2(중앙 및 시·도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을, 시·도에 시·도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중앙 및 시·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히 공무원상 부상·질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 및 조사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의 정신적 위험 상태나 자살 위험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단순히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상담·치료 연계 등 보호조치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요양급여 등의 청구 및 결정 절차》



자료: 인사혁신처

이에 개정안은 요양급여를 청구한 공무원의 재해 경위를 1차적으로 조사하는 소속 기관장⁴⁾이 해당 공무원을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하 “고위험군”이라 함)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자살예방센터 연계,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급여의 청구 및 결정) ① 제8조에 따른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에게 급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청구할 때(제1호의 요양급여는 동일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처음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장(「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는 인사혁신처장이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인을 대신하여 직접 기관장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제8조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

지원 등 자살 위험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가 요양급여 심의 과정에서 고위험군 해당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하여 그 의견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시하고, 인사혁신처장은 이를 소속 기관장 등에게 통보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자살 위험 예방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 정신건강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적시에 시행하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른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우선 고위험군 해당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하는 심의회가 자살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이를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현행 심의회 구성만으로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심리상담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⁵⁾

5)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7조(심의회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의회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 및 인사혁신처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재해보상·연금·복지 또는 복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소속 임직원 중 해당 기관

또한 심의회는 개인의 동의와 무관하게 고위험군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하고 그 결과가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정신적·신체적 상태나 질병 관련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소속 기관에 전달될 가능성이 있음. 이로 인해 당사자의 심리적 부담 등 2차적 피해가 발생하여 오히려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통보 대상 정보의 범위와 절차, 당사자 동의의 필요성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2027년 2월 28일 시행 예정인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 또는 담당하는 건강안전책임관과 건강안전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기관별로 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건강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건강관리의의를 배치하며, 건강관리의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의 건강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전문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재해보상·연금·복지·복무 등 인사행정 또는 사회보장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중에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5. 그 밖에 재해보상·연금·복지·복무 등 인사행정 및 사회보장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제3항제1호의 위원은 그 직(職)에 있는 동안 재임(在任)한다.
- 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 ⑥ 심의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급여 청구인 또는 그 청구인이 지정하는 사람,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2. 관계 공무원 또는 그 밖에 급여에 관련된 사람·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심의회의 고위험군 판단 및 소속 기관의 후속조치가 이러한 새로운 건강관리·재해예방 체계와 중복되거나 운영상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양 제도 간 역할과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인사혁신처는 요양급여 청구 공무원의 심리적 위기상황에 조기 개입하여 자살위험을 완화하고 회복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동의하면서, 낙인효과나 인사상 불이익과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자의 동의에 기반한 보호적 지원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2